



김태형's Into the Credit BEST EDGE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

Investment Edge

지난 4월 입법 예고되었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안에는 1)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 2)금융지주회사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기준 등의 제재 강화, 3)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등 기타 제도와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제재 관련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 은행지주회사의 청산/파산 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발행 근거가 마련되었다. 강화된 바젤 III 기준에 따르면 영구채 형태로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만 기타기본자본(AT1)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용이성이 다소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법 제정 전까지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은 자본시장법을 준용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왔지만, 자본시장법에서 상장회사의 금융채 발행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비상장은행/비상장은행지주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서만 발행이 가능했다. 지난해 7월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국내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 및 영구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과 더불어,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들 역시 향후 영구채 발행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발간된 보고서 등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17년 1분기말 기준) 모든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은 바젤 III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발행이 단기간 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매년 Step-up 되고 있는 자기자본 규제비율이 확정되는 2019년에 가까워질수록 발행금액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지주 가운데 현재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19년 최종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농협금융지주,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이 향후 영구채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며, 발행 시기는 경제성장 둔화의 장기화 및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업대출 자산건전성 하향 압력의 현실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Credit

김태형 CPA

02. 3779-8603

thkim@ebestsec.co.kr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

지난 4월 입법 예고되었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에는 1)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 2)금융지주회사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기준 등의 제재 강화, 3)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등 기타 제도와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제재 관련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 은행지주회사의 청산/파산 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발행 근거가 마련되었다. 강화된 바젤 III 기준에 따르면 영구채 형태로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만 기타기본자본(AT1)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용이성이 다소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법 제정 전까지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은 자본시장법을 준용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왔지만, 자본시장법에서 상장회사의 금융채 발행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비상장은행/비상장은행지주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서만 발행이 가능했다. 지난해 7월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국내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 및 영구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과 더불어,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들 역시 향후 영구채 발행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표1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

구분	~16.7.29		16.7.30~ (은행법 개정안 시행)		17.8.19~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시행)
상장은행	발행 근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준용	은행법 제33조 【금융채의 발행】		은행법 제33조 【금융채의 발행】
비상장은행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상장은행지주	無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준용	발행 근거 無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 【금융채의 발행】
비상장은행지주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앞서 발간된 보고서 등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17년 1분기말 기준) 모든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은 바젤 III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발행이 단기간 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매년 Step-up 되고 있는 자기자본 규제비율이 확정되는 2019년에 가까워질수록 발행금액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지주 가운데 현재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19년 최종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농협금융지주,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이 향후 영구채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며, 발행 시기는 경제성장 둔화의 장기화 및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업대출 자산건전성 하향 압력의 현실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표2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개정사항 (17.8.19 시행)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신설 발행조건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 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구채 발행근거 마련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형/전환형 예정사유 등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② 발행 은행지주회사가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 충족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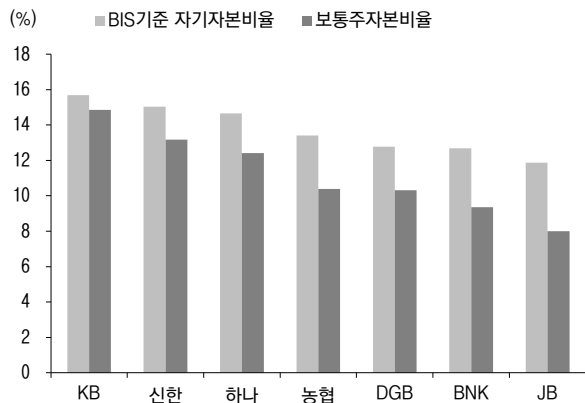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은행지주회사 잔존 조건부자본증권 현황

업체명	종목명	발행일	만기일	금리(%)	발행액(억원)	신용등급(*)	만기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조건부(상)2-1	2015-11-06	2045-11-06	4.24	1,550	AA-	30Y
	하나금융조건부(상)2-2	2015-11-06	2045-11-06	4.61	200	AA-	30Y
BNK금융지주	BNK금융 조건부(상)2	2015-08-31	2045-08-31	4.48	1,500	AA-	30Y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조건부(상)1	2015-06-25	2045-06-25	4.38	2,000	AA-	30Y
BNK금융지주	BNK금융 조건부(상)1-1	2015-06-24	2045-06-24	4.60	800	AA-	30Y
	BNK금융 조건부(상)1-2	2015-06-24	2045-06-24	5.10	300	AA-	30Y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조건부(상)1-1	2015-05-29	2045-05-29	3.95	800	AA-	30Y
	하나금융조건부(상)1-2	2015-05-29	2045-05-29	4.45	1,900	AA-	30Y
JB금융지주	JB금융지주조건부(상)1	2014-09-22	2044-09-22	6.40	2,000	A+	30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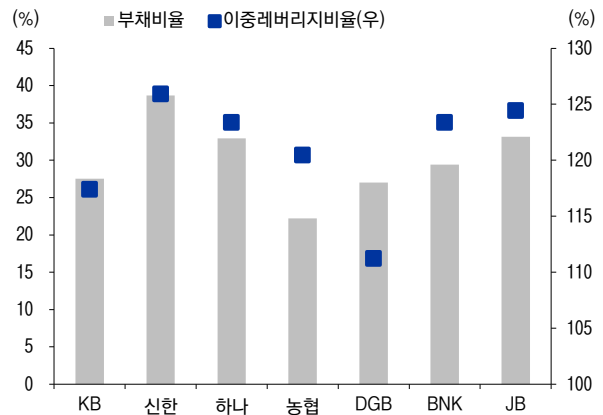
주(*): 선순위 회사채 대비 3Notch 하향된 신용등급
 자료: 인포맥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은행지주회사별 자본적정성 지표



자료: FISI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은행지주회사별 재무안정성 지표



자료: FISI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태형)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